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한인간호사협회

회칙/Bylaw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남가주 한인간호사 협회라 칭한다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Inc.

제 2 조 목적

본회는 간호 전문인의 단체로서 전 회원의 자질 향상, 권익 옹호 및 신장을 기하며 회원간의 친목, 이웃과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제 2 장 사무처 소재지 및 법인 체관인

제 1 조 본부소재지

본회의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회의 본부를 캘리포니아 남가주 안에 설치한다.

제 2 조 법인체관인

본회의 회장단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후 본회의 관인을 설정한다. 단, 관인에는 본회의 명칭과 본 협회가 법인체로 인정된 날짜를 기입한다.

제 3 장 회원

제 1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과 명예회원의 네 종류로 구분한다. 평생 회원과 정회원은 누구나 재산상, 투표상, 이관상의 동등한 권리와 기타 특관상에도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본회의 권한 행사는 각 개인당 단일 권에 한한다.

제 2 조 회원의 자격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이 되고자 원하는 자는 그 연령이 18 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국 또는 미국에서의 정규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미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하며 평생회비 혹은 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 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소정의 연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4 조 명예회원

본회의 명예회원은 본회를 위하여 탁월한 봉사 또는 공헌을 한 자로서 이사회가 이를 선출한다.

제 5 조 가입신청서 및 가입허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회의 정관, 회칙 및 기타 규칙이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한다.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할 때는 소정의 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한다.

제 6 조 회비

모든 정회원은 회장단이 설정하는 액수의 연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7 조 회원자격의 종결

본회의 회원 자격은 특정인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자격이나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위탁하지 못한다. 회원 자격은 다음의 경우 이것이 종결된다.

가) 회원의 사망

나) 회원의 사퇴

제 8 조 회원증

본회 회원증은-회원위원회 또는 현 회장단이 이를 발급한다.

제 9 조 재산권

본회의 소유 재산 또는 자산의 소유권 또는 이에 관한 이권은 개개 회원이 이를 전유하지 못한다.

제 4 장 총회

제 1 조 장소

모든 총회는 본회 본부에서 개최하거나 회장단이 정하는 기타장소에서 개최한다.

제 2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 월 또는 2 월중 회장단이 정하는 일시에 개최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새 회장단과 이사 승인, 임원 선출, 본회의 각사업보고, 재정 보고 및 기타의 제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한다.

제 3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시에 회장, 또는 이사회 의 과반수나 본회 회원 70%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 4 조 소집통고

총무는 총회 개최일의 10 일전까지 소집 통고를 하여야한다. 총회 소집 통고에는 총회 장소, 개최 일시를 명시 하여야한다. 임시총회일 때에는 토의 안건도 명시하여야한다.

제 5 조 심의 안건의 유효화

임시로 소집된 총회라도 정식으로 소집 개최된 총회에서와 같이 그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모든 사항은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음으로서 그 실효를 발휘한다.

제 6 조 성원

본회 운영을 위하여 개최하는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성원은 본회 회원 총수의 15% 이상으로 한다. 성원이 미달일 때에는 재석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총회의 휴회를 할 수 있다.

제 7 조 휴회 및 속개 통고

휴회가 된 총회의 속개 일자가 휴회 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때에는 속개 통고로 정규 총회시와 같이 하여야한다. 휴회가 된 총회가 휴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속개할 때에는 속개일시, 장소 또는 안건을 재차 통고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휴회 선언을 구두 통고로 대신할 수 있다.

제 8 조 성원미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집 개최된 총회는 일단 성원에 도달하였으면 추후로 재석회원중에 이석자가 있어서 성원에 미달할지라도 휴회할 때까지 잔여 회원으로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다.

제 9 조 투표

각회원은 모든 투표에서 단일 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투표는 본인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하거나 총회개최에 앞서서 총무에게 서면 상으로 결석 투표용지를 전달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다.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개최 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본회의 회원이 된 자만이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 장 이사회

제 1 조 이사회의 권한

본회의 정관 또는 회칙에 별도로 규정 되어있지 않는 한 본회의 모든 권한, 재산 관리 및 제반 사업은 회장단에서 운영되며 이사회가 이를 관리 감독한다. 이사회는 협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제반 행위에 대하여 권고나 제재 및 정지를 가할수있다.

제 2 조 이사회 구성 및 자격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15 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즉 임원 3 명과 회원중에서 선출된 912 명 내외로 한다.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후, 최대한 5 명의 이사를 증원할 수있다. 모든 이사는 본회의 현회원으로 최소 2 년 이상 총회와 본회행사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모든 이사는 이사회가 지정한 이사회비를 지불해야한다. 모든 이사는 임기동안 본회의 행사에 최소 50%이상 참여한다.

제 3 조 이사및 이사장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이사는 현/전 이사 3 명 혹은 현 회원 540명의 추천을 받은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임 할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은후 3 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음으로서 이사장으로 선출된다. 그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한번 재임할수있다. 이사장은 부이사장, 총무, 회계를 임명할수있다.

제 4 조 이사회 회의 장소 및 협회 조직을 위한 회합

모든 이사회는 본회 본부 또는 회의 개최 장소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개최한다. 이사 선출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협회 조직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장이된다.

제 5 조 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 개최는 6 개월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와 장소는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 6 조 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이를 소집할수있다. 임시이사회는 이사 3 명의 요청에 의하여도 소집할 수 있다.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이사회 개최일 2 일 전까지 소집 통고를 총무가

각 이사에게 서면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임시이사회라도 제반 요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규정된 바에 의하여 정식으로 소집 개최된 회의에서와 같이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모든 사항은 그 실효를 발휘한다.

제 7 조 이사회 성원

이사의회의 성원은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진다.

제 8 조 결원/증원

이사의회의 정원증가, 제명,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잔여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로 후임자를 선출 한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선출된 후임 이사는 그의 선임자의 잔여 임기만 시무한다. 단 그의 후임자가 선출되고 그 자격이 확정될 때까지 시무 하여야 한다.

제 9 조 해임

이사는 성원에 도달한 정기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투표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참석

이사회에 임석하여 발언하기를 원하는 회원은 그 사유를 서면상으로 이사회 개최 5 일전에 총무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단 이사회는 동회의 의결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의 참석 또는 참여를 규제할 수 있다.

제 6 장 임원

제 1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회장 1 명, 부회장 2 명, 총무 2 명, 회계 2 명 그리고 서기 2 명, IT 부장 1 명으로 한다. 회장과 총무를 제외한 기타 임원직은 겸직이 가능하다. 이사회는 본회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기타 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단, 이렇게 지명된 임원은 본회의 회칙이나 이사회가 의결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임기 동안 부여된 권한 행사와 부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조 임원 선거

선거위원회는 2 대의 전임회장, 현 회장과 부회장 2 명, 총 5 명으로 구성되며 신임 전 회장이 선거위원장으로 위임된다. 선거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진행되는 회장단 선거를 관리 심사하며 이 결과를 정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여 3 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음으로서 총회의 인준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다수를 얻은 자로서 선거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출되며 이를 총회에서 인준 받음으로서 그 자격이 부여된다. 총무, 회계 및 서기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그자격이 부여된다. 본 장 제 3 조 및 제 5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명되는 직분을 제외한 본회의 모든 기타 임원은 매 2 년마다 이를 선출한다. 이렇게 선출된 임원은 본인이 사퇴하거나, 제명 또는 자격상실이 있거나 또는 후임자가 선출되고 그 자격이 확정될 때까지 시무를 하여야한다.

제 3 조 고문

협회는 고문단을 둘수 있으며 본회의 제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고문으로 부터 받을 수있다. 고문은 평생회원이어야 하며, 전임회장으로서 풍부한 업무경험을 가진자로서 고문단이 결정한 회비를 지불해야한다.

제 4 조 해임과 사임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즉 정기 또는 임시이사회에서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표결에 의하여, 또는 해당 임원이 이사회가 선출한자가 아닐 때에 한하여, 이사회로부터 해임권을 부여 받은 임원이 해임 할 수 있다.

사임하기를 원하는 임원은 이사회나 회장 또는 총무에게 사임서를 제출한다. 그 사임서의 명시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사임이 확정된다.

제 5 조 결원

사망, 사임, 해임, 자격정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임원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회칙이 규정하는바 해당임원직 임명 절차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

제 6 조 회장

회장은 본회의 정기총회, 모든 임원회, 그리고 행사의 의장이된다.

제 7 조 부회장

회장 유고시에 또는 회장이 부재 시에는 제 1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이때에는 부회장은 회장이 보유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또한 회장직의 모든 제한의 규제를 받는다. 부회장은 또한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 임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총무

총무는 다음의 제반 업무를 관장 한다. 즉, 이사회, 임원회 및 총회 등 모든 집회에 관한 회의록을 본회 본부에 보관하는 책임을 진다. 이러한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되어야한다. 집회 개최 일시와 장소 정기 또는 임시의 구분, 임시 회합일 경우에는 개최권한자, 소집 통고 여부, 모든 회합에 출석 한자의 명단, 총회 출석자 및 결석 투표지 제출자 수 및 의사진행기록 등, 총무는 본회 회원 전원의 명단과 주소록을 본회 본부에 비치하는 책임을 진다. 총무는 본회 회칙 또는 일반법이 규정하는 대로 본회의 총회, 이사회, 그리고 임원 소집 통고를 발급하는 책임을 진다. 총무는 또한 본회 관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진다. 총무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의 권한 행사나 임무 수행을 한다.

제 9 조 회계

회계는 본회의 재산 관리와 제반 업무 집행 상의 제정 관계 문서 일체를 적절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장하고 보존할 책임을 진다. 회계가 기록 보관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회 자산, 채무, 수입, 지출, 소득, 결손 및 잉여금액 등, 회계는 또한 본회의 재정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감독을 할 책임을 진다. 회계는 또한 본회에 관한 모든 자금, 유가증권 및 기타 관계 문서의 적절한 관리책을 강구할 책임을 지며 또한 본회의 모든 재정상의 거래에 관한 진정하고 정확한 기록을 위하여 적절한 출납기장 방식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할 책임을 진다. 회계는 또한 정기이사회마다 본회의 재정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 회계는 본회에 귀속되는 모든 금전과 기타의 귀중품을 본회 명의로 또한 본회 소유 하에 이사회에서 지정한 보관 기관에 영치하여야한다. 회계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된 기타의 권한 행사나 임무 수행을 한다. 본회의 장부는 이사회가 요구할 때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요청이라고 사료되면 언제나 제공하여야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 1 조 위원회의 설치

회장단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한 위원회에 회칙 채택, 수정 및 폐기권을 제외한 기타 회장단의 권한이나 실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한 행사는 회장단의 통제하에 모든 활동을 하여야한다.

제 2 조 특별위원회

회장단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후, 필요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그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수행만을 하며 회장이 부여한 특정 권한 이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한다. 특별위원회가 그 소기의 과업을 완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 3 조 위원회의 임명

각 위원회의 소속 위원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직이 없을 때에는 회장이 이를 임명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4 조 임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위원장직 또는 위원직에서 해임 당하거나 이를 사임하거나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중 시무한다.

제 5 조 회의와 성원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회장이 지시하는바에 따라 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가진다. 본회 회칙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각 위원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로 성원이 이루어지며 참석 인원 과반수의 표결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 8 장 기타 규정

제 1 조 수표 및 지불명세서

본회의 이름 아래 발급되었거나 본회가 지불하여야할 모든 수표, 지불명세서, 그리고 본회의 소유로 되어있는 유가증권 등을 이양할때 필요한 서명은 본회에서 지명한 특정인만이 할 수 있다.

제 2 조 계약의 체결

본회 회칙에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한 본회의 이름 아래, 또는 본회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증서에 서명할 수 있는 것은 본회가 지정하는 임원 또는 대리인에 한한다. 이렇게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은 전반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안건에 한하여 지정되는 수도 있다. 본회의 임원, 대리인, 또는 기타 직원은 본회의 허가 없이는 본회의 이름 하에 계약이나 기타의 여하한 언약도 체결하지 못하며 또한 여하한 목적이나 액수의 약조나 채무도 이를 받아드리지 못한다.

제 3 조 임원과 이사에 대한 보상

본회임원이나 이사가 본회를 위하여 봉사하였거나 물적 제공을 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의 액수, 시일, 그리고 보상 방법은 회장단에서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조 재산

본회의 재산, 자산, 이윤, 그리고 순소득은 박애적 그리고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있으며, 본회의 이윤이나 순소득은 이사, 임원, 또는 회원, 그리고 그밖에 여하한 개인도 이를 자기개인 소득으로 충당하지 못한다. 본회가 해체되었거나 본회 사업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본회가 가지고있는 일체의 부채를 지불한 뒤에 남은 자산은 정세법 제 23701 조 (A)항과 국세법 제 501 조 (C)항 ****하는바에 의하여 면세 단체 허가를 받았으며 전적으로 종교, 박애, ****, 공중 안전 시설 검사, 문예 그리고 교육 분야를 위하여 설치된 비영리 기금, 재단 또는 법인체에 이를 분배하여야한다.

제 9 장 회칙수정

제 1 조 회원에 의하여

회칙을 새로이 채택하거나 이를 폐기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총회 또는 이를 위하여 특별히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과반수의 표결 또는 합의서에 의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제 2 조 이사에 의하여

회칙을 수정, 변경 또는 폐기하거나 새로운 회칙을 이사회를 통하여 채택할 수 있다. 단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 3 조 회칙 보관

회칙을 수정하였거나 새로이 채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칙 철에 원본과 같이 보관하여야한다. 회칙이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와 폐기 절차가 취하여진 회의 일자, 또는 합의서에 의하여 폐기되었을 때에는 동합의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날짜를 회칙철에 기재 하여야한다.

Revised 01/26/2020 (See attached file)

부칙 1

이 회칙은 2015 년 8 월 22 일 남가주 한인간호사 협회에서 제 6 장 제 1 조 회칙을 회계 1 명에서 2 명으로 수정하고 즉시 시행한다.

부칙 2

이 회칙은 2015 년 10 월 27 일 남가주 한인간호사 협회에서 제 1 장 제 1 조에 있는 영문명칭 Korean Nurses of Association of California Inc. 를 Korean American Nurse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Inc. 법인명 으로 변경하고 즉시 시행한다.